제344회 정례회

2015.11.13.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15년 11월 04일

○ 회부일자: 2015년 11월 05일

3. 제안이유

세수결손에 따른 교육재정의 어려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경직성경비 증가 등에 대처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감채기금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완화하여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산정·교부되는 경우에는 감채기금을 자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 설치 근거 조항 정비(안 제1조)

나. 기금조성에 대한 규정 완화(안 제2조제2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세수결손에 따른 교육재정의 어려움 등에 대처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감채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에 예외규정을 두어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1조는 조례 설치 근거 조항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법」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로 변경하여 명확히 하였고,

○ 안 제2조2항에서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에서, 다만 ‘지방채의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산정·교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예외규정을 두어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였으며,

○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충청북도교육감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매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기금으로 출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방채 원리금으로 상환한 경우
<신 설>	2. 지방채의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산정·교부되는 경우
제6조(기금의 조성) ① (생 략)	제6조(기금의 조성) ①(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의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2015.6.22.] [법률 제13335호, 2015.6.22. 일부개정]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자치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